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86회 제1차 정례회(폐회중)

검 토 보 고 서

2026. 11. 16.(월)

검 토 안 건	발 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열정으로 열일하는 열린 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장홍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장홍용)

1. 제안경위

○ 제안자: 마포구청장(건강증진과)

○ 제안일: 2026. 11. 10.

○ 회부일: 2026. 11. 12. (의안번호: 26-133)

2. 제안이유

○ 고령층은 면역력 저하로 대상포진에 취약하며 다른 연령층보다 후유증 중증화 위험성이 높아 기존 취약계층 고령자에 한정하여 지원하던 범위를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을 대상으로 확대 지원하여 노년기 보편적 건강권을 보장하고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취약계층에 한정하여 규정한 내용 삭제

나. 지원대상(안 제2조)

- 지원대상을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서 65세 이상 구민으로 확대

다. 지원절차(안 제5조)

- 지원 대상 범위 확대에 따른 증빙자료의 간소화

라. 부칙

-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예산 부담 등을 고려하여 연령별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함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 관한 특례) ① 이 조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지원대상은 시행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77세 이상,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70세 이상 구민으로 한다.

  ② 제1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4. 참고사항

○ 관계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 입법예고: 2026. 10. 15.~11. 14.(제출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된 개정조례안으로 대상포진은 수두대상포진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배근

신경절에 잠복 감염되어 있던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나 대상포진 발병시 급성 및 만성 통증으로 인해 삶의 질을 저하시키며 사회, 경제적으로 상당한 질병부담을 유발시켜 고령층은 면역력 저하로 대상포진에 취약하며 다른 연령층보다 후유증 중증화 위험성이 높아 기존 취약계층 고령자에 한정하여 지원하던 범위를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을 대상으로 확대 지원하여 노년기 보편적 건강권을 보장하고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에서는 대상자를 기존 “65세 이상 취약계층”에서 “65세 이상 마포구민 전체”로 확대하고,
- 안 제5조에서는 대상자 범위 확대에 따른 증빙자료를 신분증으로 간소화 하며,
- 부칙에서는 사업예산 및 안정적 확대를 위하여 지원대상 연령을 2027년까지는 77세 이상으로, 2028년까지는 70세 이상으로 연령별 점진적 확대를 하고자 하는 것임.

○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의 상위법과 충돌여부를 살펴보면 개정조문 관련 저촉사항이 없으며 노령층은 면역력 저하로 대상포진에 취약하며 다른 연령층보다 후유증 중증화 위험성이 높아 65세 이상 전체 지원 시, 노령층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할 수 있음. 2026. 9. 기준 마포구 전체 인구수는 355,806명이며, 이 중 65세 이상 인구수는 63,541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시 전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52%를 상회하여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우리구 역시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으므로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임.

이러한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어르신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복지 확충 방안이 강구되고 있으며, 특히 노년기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고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대상포진은 사전 예방이 최선의 대책이나, 현실적으로 고가의 예방접종비용은 어르신 가구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2026년 7월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9개 자치구가 일정 연령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보편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우리 구 역시 이에 발맞춘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서울시 자치단체 대상포진 지원현황

(2026. 8. 31. 기준)

구분	65세 이상 어르신		70세 이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전체 어르신	
해당 자치구	14개구	9개구	1개구
	- 마포, 서초, 강북, 관악, 동대문, 중랑,구로 강서, 성북, 종로, 양천, 영등포, 서대문 - 은평(50세 이상)	용산, 성동, 도봉 강동, 노원, 성북 송파, 광진, 강남	동작

-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상자를 전면 확대함으로써 우리 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무료 대상포진 예방접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보편적인 건강권 보장과 포괄적인 의료 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것으로 사료됨.

아울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질병 예방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가계 의료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개정 조례안으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면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구민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대상포진 무료접종을 위한 일시 전입 등 부조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지원 대상을 '마포구 거주기간 1년 이상' 등의 제한 규정을 두어 무분별한 위장전입을 사전에 방지할 방안도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담당부서	담당과장	담당팀장
건강증진과	김영임 (9060)	최수미 (9101)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조례안 제2조(지원대상)

나. 조례안 제3조(지원내용)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1인별 지원 비용: 최대 100,000원(백신비 + 시행비*)

*백신비: 80,000원(생백신), 160,800원(사백신) / 시행비: 20,000원

나. 접종대상

연도	대상자 구분	전체대상자	접종인원	비고
1차(2027년)	77세 이상	25,275명	8,840명	77세 이상 대상의 35%
2차(2028년)	70~76세	25,278명	8,840명	70~76세 대상의 35%
3차(2029년)	65~69세	25,411명	8,890명	65~69세 대상의 35%
매년(2030년~)	65세 도래자	4,300명	1,500명	매년 65세 도래자의 35%

(2026년 8월 주민등록통계 인구 기준)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매년	합계
세입	소계(a)	-	-	-	-	-
세출	○ 접종비용	884,000	884,000	889,000	150,000	2,807,000
	소계(b)	884,000	884,000	889,000	150,000	2,807,000
□ 총 비용(a-b)		-884,000	-884,000	-889,000	-150,000	-2,807,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매년)	합계
기타(구비)	884,000	884,000	889,000	150,000	2,807,000
합계	884,000	884,000	889,000	150,000	2,807,000

5. 덧붙이는 의견

○ 기존 지원(65세 이상 취약계층 5,064명 대상 55,000천원 소요) 대비 확대 지원(65세 이상 어르신 80,264명 대상) 시 2,587,000천원 증액

○ 대상자수는 인구변화(전입·전출, 사망 등) 등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함

○ 백신비 및 시행비 변동되더라도 지원 비용은 최대 10만원을 한도로 함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보건소 건강증진과 오은혜
연 락 처	02-3153-9094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백신비 및 시행비: 서울의료원 시단가계약 금액 및 질병관리청 시행비 공고가

2. 인구수: 2026년 8월 31일 주민등록통계 기준

- 2027년부터 2030년까지 해당연령에 포함되는 도래자 인구까지 포함 기준

참 고 자 료

1. 관계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시예방접종)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2. 대상포진 백신 정보

대상포진 백신 현황

구 분	생백신(스카이조스터)	사백신(싱그릭스)
차이점	- **1회 접종**(백신비 76,670원) - 70세 이상 약 67% 항체형성	- **2회 접종**(백신비 360,820원) - 70세 이상에서 90% 항체 형성
비용	- 접종비 100,000원/1인 예상 = 시행비(19,610)+백신비(76,670) +α(인상비용)	- 접종비 360,820원(160,800×2회) ※ 평균 생백신 접종 비용지원 범위 내에서 (100,000원) 지원

3. 대상포진 접종 현황

구분	접종대상자 (명)	접종자 (명)	접종률 (%)	예산편성액 (천원)	집행액 (천원)	불용액 (천원)	불용률 (%)
2025	4,647	486	41.2	55,000	9,570	45,430	82.6
2024	3,738	1,429	38.2	291,830	222,072	69,758	23.9